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7호로 2021년 2월 17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자치행정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2. 19. ~ 2.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표창 규정 및 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익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사 법정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